
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81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9.

발 의 자 : 문진석 · 이재관 · 권향엽
윤호중 · 홍기원 · 김종민
김교홍 · 김문수 · 조인철
이정문 · 박수현 · 윤종균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기장 등은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,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에 대한 우려로 기장 등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음. 이에 기장 등이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당한 업무수행 시 형사책임을 감경·면제할 수 있는 면책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아울러, 현행법상 항공기 출입문·탈출구·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, 대부분 징역 3년 이하에 집행유예이거나 훈방 또는 혐의없음으로 처리됨. 이에 경미한 경우는 금전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역 10년에 상응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고자 함(안 제22조의2 신설 등).
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항공기 내 불법행위 저지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) 항공기 내에서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행위를 저지하는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, 그 저지행위가 불가피하고 저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1.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 자
2.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기장등의 요청이 있어 협조한 자

제46조제1항 중 “징역에”를 “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

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2조의2(항공기 내 불법행위</u> <u>저지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</u> <u>면) 항공기 내에서 제22조제1</u> <u>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사</u> <u>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</u> <u>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</u> <u>행위를 저지하는 행위를 하여</u> <u>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,</u> <u>그 저지행위가 불가피하고 저</u> <u>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고의 또</u> <u>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</u> <u>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</u> <u>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</u> <u>1.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1호부</u> <u>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하려</u> <u>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</u> <u>저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</u> <u>한 자</u> <u>2.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</u> <u>따른 조치에 관하여 기장등의</u> <u>요청이 있어 협조한 자</u>
제46조(항공기 내 폭행죄 등)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	제46조(항공기 내 폭행죄 등)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

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·협박·위계행위 또는 출입문·탈출구·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<u>징역</u>에 처한다. ② (생략)	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·협박·위계행위 또는 출입문·탈출구·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<u>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</u>에 처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